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제2998호
----------	--------

제출년월일 2022. 8. 18.
제출자 김포시장

1. 심사경과

- 본 안건은 2022년 08월 1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별표나 별지서식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로 변경
-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대한 근거법령 조문 추가 (안 제1조)
- 별표나 별지 서식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항목 일괄 정비
 - 연락처(주택) ⇒ 삭제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및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근거 없이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기재 서식을 일괄 변경하여 불필요한 수집항목을 정비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